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2021-1학기 신·편입학 외국인유학생 정보(10명)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담당자	성 명 문승연
			소 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화번호 041-621-1347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21.1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업로드(10명)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01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E-mail, 입학유형, 등록(예정)교육과정, 계열구분, 학과, 교육기간, 등록금최종납입기한, 교육종료예정일자, 한국어구사능력, 입학신청경로, 현지추천단체, 최종출신학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비밀번호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밀정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위탁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비밀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위탁종료 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